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1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김도읍・구자근・강승규

김희정 • 조지연 • 이성권

주진우 · 김석기 · 윤재옥

윤한홍 · 김기현 · 권영진

서지영 의원(13인)

제안이유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코로나19 이후 세계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전망되는 산업 분야로 성장하고 있음.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665조로 미국, EU 등은 푸드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와 기술투자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인 한편, 우리나라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푸드테크를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 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 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

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사.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6조).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제2장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 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 2.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 3.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 4.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5.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 6.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 7.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8.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 9.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①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푸 드테크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3년으로 하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 제7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①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 정보 제공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창업 지원) 정부는 푸드테크산업 관련 창업 촉진, 창업자의 성 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 2.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 3. 기술협력 · 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 5. 그 밖에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해외시 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시장개 착·홍보, 공동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이하 "푸드테크사업 자"라 한다)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혁신과 푸드테크산 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 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점검·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4.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 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업무정지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 2.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 강화
- 4.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 5. 그 밖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푸드테크사업자 등은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 청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 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 등에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

- 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 제17조(보고 및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푸드테크사업자, 전담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고·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검 · 조사를 거부 ·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규제개 선의 심의에 관한 사항